

#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허명도의원	질문일시	2006. 2. 20
답변부서	건축과		
질문주요내용	<p>장림동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면질문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신축공사를 추진한 실질적인 배경 그 과정에 대하여 추진경과를 답변바람</li> <li>2. 중구에서 협조 요청한 관련서류와 인·허가관련 우리 구 조치 내역은 무엇이며, 추진과정과 관련한 일건서류(건축허가 등) 내역?</li> <li>3. 추진과 관련한 각종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사항과 지역주민 여론수렴관련 사항 등(관련자료 사본첨부 제시)</li> <li>4. 본건과 관련한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운영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은?</li> </ol>		

1. 장림동 935번지상 『중구환경자원관리소』는 '97년 중구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재활용선별장으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작업장내 안전사고 예방과 노천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주변미관 등이 저해되어 오던 중 선별장내에서의 완전한 분리·선별·집하작업을 하여 깨끗한 주변 환경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중구청장 으로부터 2005.11.21자로 건축협의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 동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중간처리시설(소각, 압축시설 등) 및 최종처리시설(매립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제1항 11호 【별표12】 사목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전용공업 지역 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축 가능한 용도로 분류 되어 있는바, 신청내용에 대하여 2005.12.7자로 건축협의 처리 한바 있습니다.

2. 중구청에서 접수한 관련서류 및 인허가 관련 일건서류는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3. 동 건축허가(협의)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현재 옥외에서 선별등 작업을 하던 것을 건축후에는 실내에서 쓰레기 처리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환경이 개선되는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들과의 회의 및 간담회 개최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 동시설은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압축후 강서구 생곡동 소재 자원재활용업체 반입을 계획으로 2006.3월 착공후 2006.8월 준공 예정이며, '97년부터 현재까지 기존 재활용선별 작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항은 없어 기존 건물 철거후 신축에 따른 주변환경 악화 및 주민불편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열악한 시설이 신축에 의해 개선되는 사항이므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중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